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[별지 제33호서식]

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[ ]신고서 [ ]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	자격	자격구분	[ ] 주택관리사 [ ] 주택관리사보(제 회 시험 합격)		
		자격번호	제 호(발급 시·도:)		
		취 득 일	년 월 일		
단지 현황	단 지 명				
	단지주소	(전화:)			
	세 대 수	세대	승강기 유무	대 또는 ( )	
	난방방식		사용검사일	년 월 일	
관리 방법	[ ]자치관리	개 시 일	년 월 일		
	[ ]위탁관리	상 호	주택관리업자:		
		주 소			
	공동주택 관리기구	기술인력		총 명	
		관리인력			
배치 사항	[ ]신 고	배치시작	년 월 일 (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)		
	[ ]변경신고	변경사항	[ ] 신고인 정보 [ ] 단지현황 [ ] 관리방법 [ ]배치종료		
		변 경 전			
		변 경 후			
		배치종료	년 월 일 (관리사무소장 업무종료일)		
업무 직인	[ ]신 고 [ ]변경신고	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.		(인)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 ]신고 [ ]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주택관리사(보) (서명 또는 인)

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	**<신고시>**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,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) 1부 2.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·인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) 1부 3.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**<변경신고시>** 1.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유 의 사 항

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

작 성 방 법

1.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"신고인 정보, 단지현황, 관리방법"인 경우에는 변경 전·후 란에 변경내용을 적고, 만약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"별첨"으로 적은 후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.
2. 배치사항 변경신고의 변경사항이 "배치종료"인 경우에는 배치종료 란에 신고인 본인이 배치신고 하였던 공동주택에서 퇴직한 날을 적습니다.
3. 업무직인 란에는 중심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이,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을 날인합니다.
4.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